

무배당 건강나이스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인서

무배당 건강나이스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1년 11 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건강나이스보험

### 1. 보험상품의 명칭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①) 건강나이스(②)보험	순수보장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및 ②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및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30년	10년/15년/20년	20세 ~ 60세	월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 6. 보험상품 가입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청약일 직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이하 '건강검진결과'라 한다)를 하나생명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 할인

(1) '건강등급'의 정의

(가) 건강등급이란 피보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BMI,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TOT, HDL, 중성지방), 간수치(AST, ALT, 감마GTP))를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질병별 의료비 및 발생률 예측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나이(이하 '건강나이'라 한다)와 계약일 또는 건강등급 재적용일(계약일 이후 5년마다 돌아오는 계약해당일) 기준 보험나이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기본등급으로 산출된다.

건강등급	보험나이(세)와 건강나이(세)의 차이
1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geq$ 5세
2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 4세

3 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 3세
4 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 2세
5 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 1세
기본등급	(보험나이- 건강나이) ≤ 0세

(나) 건강나이 산출시 청약일 또는 건강등급 재적용일 직전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를 적용한다. 건강등급 재산출시 건강등급 재적용일 직전 2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가 없는 경우 기본등급으로 산출된다.

(2) 건강등급의 적용

(가) 회사는 청약시 산출된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건강등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건강등급	건강등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
1 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5)세 보험료
2 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4)세 보험료
3 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3)세 보험료
4 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2)세 보험료
5 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1)세 보험료
기본등급	(계약체결시점의 보험나이)세 보험료

(나) 건강등급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일 이후 5년마다 재산출하여 적용하며 건강등급 재적용일에 해당하는 납입회차부터 다음 건강등급 재적용일 전일까지 재산출된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다) 피보험자는 건강등급 재산출을 위하여 건강등급 재산출기간(건강등급 재적용일 3개월 전 계약해당일부터 1개월 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동안 하나생명 모바일앱을 통해 건강등급 재적용일 직전 2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등급 재산출기간 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적용일부터 다음 건강등급 재적용일 전일까지 기본등급이 적용된다.

(라) 청약시 또는 건강등급 재산출시 정해진 건강등급은 다음 건강등급재적용일 전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기간 내 건강상태의 변경을 이유로 조정될 수 없다.

(마) 회사는 건강등급 재산출기간 시작일 이전 15일부터 건강등급 재산출기간 및 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한다.

(바) 회사는 건강등급 재적용일의 15일 전까지 재산출된 건강등급 및 적용기간, 건강등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한다.

나. 건강검진결과 제공 할인

(1) 적용대상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건강등급 재산출시 하나생명 모바일앱을 통해 직전 2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를 제공한 계약

(2) 할인적용

계약일 또는 건강등급 재적용일부터 다음 건강등급 재적용일 전일까지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다만, 건강등급 재산출기간 내에 건강등급 재적용일 직전 2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를 하나생명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 이후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적용일부터 다음 건강등급 재적용일 전일까지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해당 건강검진결과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다. 건강건기 할인

(1) 적용대상

피보험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걸음 수 측정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효한 계약

(2) 할인조건 및 적용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그리고, 매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부터 그 날을 기준으로 10개월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일일 목표 걸음 수(7,500보)를 달성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 측정기간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3) 기타

- (가) 회사는 목표 걸음 수 달성 여부를 어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나) 회사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운영 중단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목표 걸음 수의 측정·수집 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어플리케이션 알림메시지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목표 걸음 수의 측정·수집 기준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보험료 할인 적용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어플리케이션 알림메시지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라) 회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목표 걸음 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건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마) 걸음 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일일 목표 걸음 수 달성 일수는 측정기간 +1개월 내에 어플리케이션에 마지막으로 접속하여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기간 종료일+ 1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측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접속하여 확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가입자 할인

회사는 정상유지되고 있는 당사 보험상품의 기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이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이 계약의 보험료의 3%를 할인하며, 제 1 회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마. 중복적용에 관한 사항

'가. 건강등급 할인' 내지 '라. 기가입자 할인' 에 해당하는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4. 기타

####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3호)

##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